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2. 13.(목) 10:00

제253회 금천구의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78호
- 나. 제 출 자 : 김용술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5. 1. 23.
- 라. 회부일자 : 2025. 1. 23.

2. 제안이유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목 변경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함(안 제6조).
- 나. 수집인의 자립과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다. 그 밖의 조례 체계를 정비함(안 제8조,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1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5. 2. 4.~ 2. 10.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함.

나. 주요 내용

1) 제목 변경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함(안 제6조).

- 재활용품 수집인의 수집 및 운반에 필요한 장비와 방서·방한 물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함

2) 수집인의 자립과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수집인과 손수레 광고 등 협력사업 추진
- 수집인의 자립과 생계 안정을 위한 일자리 연계
-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3) 그 밖의 조례 체계를 정비함(안 제8조, 제9조).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인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자립정착 및 안정적 생계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약칭: 순환경제사회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전부개정]

제4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

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2.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